

2012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

회의일자 : 2012. 4. 25.

1. 회의일시 : 2012년 4월 25일(수) 15:00
2. 회의장소 : 청강문화산업대학 대회의실
3. 위원정수 : 7명
4. 재적위원수 : 7명
5. 참석위원 : 7명(박영철, 이경학, 송용우, 김상동, 김용재, 박인희, 정호영)
6. 불참위원 : 없음
7. 회의안건 :

가. 심의안건

제1호 안건: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의 건

8. 회의내용

성원보고 : 간사가 위원 정수 7명중 7명이 참석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되었음을 보고하다.

개회선언 :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박영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.

박영철 위원장: 심의안건인 제1호 안건을 상정하며, 등록금 산정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간사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다.

간 사 : 제1호 안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에 대해 설명하다.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(2012. 1.26)에 의해 “사학연금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, 다만 학교경영기관에서 법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“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우리대학의 2012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예산액 384,000천원 대비 매년 5% 증가를 예상할 경우 2012년, 2013년, 2014년 법정부담금 총 예상액은 1,215,000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중 법인의 수익용재산 수익 발생액으로 매년 200,000천원씩 3년간 총 600,000천원을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, 나머지 615,000천원은 학교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.

법인부담금 신청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신청할 예정이며, 재정여건 개선 계획 등을 추가로 설명하다.

박영철 위원장: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향상을 할 것이며 향후

사학연금법정부담금 전액을 학교법인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하다.

김용재 위원: 최근년도에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할 것을 요청하다.

박영철 위원장: 법인의 수익으로 매년 150,000천원에서 200,000천원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, 추가 부담할 경우에는 원금으로 부담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하다.

송용우 위원: 제1호 안전에 대해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.

박영철 위원장 :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심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용재 위원의 동의와 박인회 위원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폐회선언 : 박영철 위원장이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김상동 위원의 동의와 이경학 위원의 재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니 15시 30분이었다.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2012년 4월 25일

706105- 011 7750

10461
위원장

~~박영철~~
박영철 (인)

위원

이경학 (인)

위원

송용우 (인)

위원

김상동 (인)

위원

김용재 (인)

위원

박인회 (인)

위원

정호영 (인)